



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

2016. 5. 26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추진 경과	1
II.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현황	2
III. 평가	3
IV. 보완 필요사항 검토	5
V. 향후계획	6
<참고>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	7

I 추진 경과

< 추진 배경 >

- 고객이 예금·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종전에는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음
 - * 창구 직원은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상의 사진과 내방 고객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식별
- 금융실명제 도입('93.8) 당시부터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실명을 "대면"(face to-face)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지속
- 핀테크 발전 추세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「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」 발표('15.5)
 - 소비자가 시간·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

< 주요 내용 >

- 해외 비대면 실명확인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방식을 허용

* (이중확인: 필수) ①신분증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(바이오인증 등) 중 "2가지" 의무 적용

* (다중확인: 권고)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(휴대폰인증 등),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①~⑦ 중 추가확인

-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(자체&외부)를 거친 후 시행토록 함으로써 도입 초기에는 거래 편의성 보다는 거래 안정성에 중점
 - * 금융회사들이 실무 참고할 수 있는 「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」(은행연·금투협)
- ⇒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은행권 먼저 시행('15.12월 유권해석 변경)한 후, 증권사 등 제2금융권 단계적으로 시행('16.2.22)

II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현황

< 현황 >

-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약 6개월(제2금융권은 3개월)간 31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중 (15.9만건 계좌 개설)
 - * 업권별 신규 수시입출금 계좌 개설건수(월평균, 좌) : (은행) 약 100만 (증권) 17만
 - <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('16.5.20일 기준) >
- | | 증권 | 은행 | 클라우드 펀딩 중개회사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회사 수 | 19 | 12 | 8 |
| 발급 계좌 수 | 127,581 | 31,212 | |
- (은행) 지점 접근성이 높고, 대면 상품판매가 아직 중요 → 비대면 실명확인 활성화에 비교적 소극적 (신규발급 계좌 중 0.5% 수준)
 - 일부 특수·지방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 중이나, 서비스 대상 계좌범위 및 고객군을 제한*하여 운영 → 예금계좌 한정(대출계좌 제외), 온라인 브랜드 이용 고객 등
 - *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금융사기 활용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정
 - (증권) 누적되어있던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수요가 집중되고 증권사도 적극적 마케팅 → 온라인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높은 활용도 (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%가 비대면 개설(추정))
 - * 증권계좌는 은행계좌에 비해 피싱 등에 잘 사용되지 않고 대포통장 활용 곤란
 - 신분증 사본 제출 + 기존계좌 활용(→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) +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(31개사 중 26개사)
 - * 기타 5개사는 그 외 영상통화, 접근매체 전달시 직접확인 등의 방식을 활용
 -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위·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'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*'을 적용
 - * 행자부·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「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표준 및 관리기준」 마련
 - ** 동 기술표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마련한 기관부터 행자부·경찰청의 「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」을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이용 가능

< 전망 >

□ 이용고객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향후에도 이용고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금융회사는 예상

- (은행) 서비스 대상 고객군과 업무범위를 하반기 중 확대 예정
-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활성화 등에 따른 이용고객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중

< 시중은행 서비스 현황 및 계획 >

	현행	향후 계획
하나	요구불계좌 개설,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정	+ 모든 전자금융서비스 + PC 웹페이지
신한	요구불계좌(2종 한정) 개설	+ 예·적금 계좌 개설
우리	대출고객 한정 계좌개설	+ 전고객 대상 계좌개설
국민	요구불계좌 개설	+ 해외송금, 여러 가지 신고
기업	예금 계좌 개설	+ 적금 계좌

- (제2금융권) 하반기 중 중소형 증권사,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등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

III 평가

□ 계좌개설부터 계좌해지까지 금융거래 소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한층 제고

- 은행업무 : 계좌개설 이후 종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접근매체 발급, 전자금융서비스 신청, 이체한도 상향,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

< 은행 업무 비대면처리 프로세스 >



- 금융투자업무 :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, 최근 투자자문 및 ISA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

< 증권사 비대면 업무처리 프로세스 >



- 일부 증권사는 종전에 은행에 지급하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*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고객 유치

* (00증권) 비대면 개설계좌상 온라인거래수수료 5년간 무료
 (00증권) " 주식거래 수수료 1년간 무료

□ 온라인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

- 은행의 경우 '온라인 브랜드*'를 별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활용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에 대비

* 예 : (신한) 씨니뱅크 (우리) 위비뱅크 (기업) 아이원뱅크 (하나) 원큐뱅크

- 점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방은행,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비용 감소* 및 채널 경쟁력 제고

* 1만건의 비대면 계좌발급시 계좌개설위탁수수료만 1.2~1.3억원 절감 가능

<비대면 계좌개설 발급건수 상위 금융회사(16.5.20일 기준)>

	키움증권	씨티은행	미래에셋대우	부산은행
발급계좌수(좌)	44,888	15,691	12,382	10,298

-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생소하고 다소 복잡함에 따라 계좌개설 과정에서 **고객의 입력 오류** 또는 **중도 포기 사례도 일부 발생**

*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도한 고객 대비 최종 계좌개설 고객은 약 **60~65%** 수준

- 다만, 다중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대포통장, 피싱 등 **금융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**은 오히려 **줄어든 것으로 평가**
(→ 취약 요인 여부는 지속 모니터링)

※ 참고 : 금융권의 평가

< **키움증권** > 그간 온라인 증권회사임에도 불구하고, **오프라인에서** 금융거래를 시작해야 함에 따라 투자 프로세스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.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고객들이 **계좌개설에서 투자까지 One-Stop으로**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반응이 폭발적임. 야간과 휴무일에도 **계좌개설이 가능하게** 된 점도 고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었음.

< **씨티은행** > 비대면 실명확인을 계기로, 비대면으로 **신규 예금의** 신청 뿐 아니라 **인터넷 뱅킹 신청, 국제 현금카드 신청 및 배송 서비스**까지 제공하고 있음. 바쁜 고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큰 기여

< **미래에셋대우** > 비대면 실명확인 이후 온·오프라인 어디에서든 계좌개설 및 상담이 가능해져서, **온·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음.** 비대면으로 **계좌를 개설하고 지점 PB에게 상담**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여, 비대면 계좌개설이 **대면 영업까지 활성화**하는 효과

< **부산은행** >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고객들이 **야간에도 비대면 상담 및 계좌개설**을 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편.

IV **추가 보완사항 (금융회사 제기의견 반영)**

-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에 부합하지 않는 **금융법령*** 정비

* 예 :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(일회용비밀번호 사용의무의 예외)
→ 투자매매업자 등을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

⇒ **수용** (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 중[4.14일~])

- '대면' 계좌개설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**낮은 규제**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**금융제도 정합성 제고**

- **실명확인 증표 및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**

- **실명확인 증표**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외 '**여권**' 추가
- **기존계좌 활용방식**의 경우 고객의 **금융회사에 대한 소액 이체** (고객→금융회사) 이외에 **반대방향의 이체** 방식(금융회사→고객)도 허용

⇒ **수용** ('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'에 반영)

* 그동안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높은 실명확인증표 및 특정 방식 위주로만 운영

- **기발급 접근매체(OTP 등) 활용***을 통한 **본인확인 방식**도 실명확인 방식으로 인정

* 예 :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접근매체의 소지 여부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확인

⇒ 금융회사별 **자율 판단**에 따라 '**새로운 방식**' 도입·활용 가능하나,

- 비대면 실명확인의 **안정성 및 보안성**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·금투협 등 관련 협회 및 금융보안원과의 논의를 거쳐 **최소한의 기준** 마련('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'에 반영)

* 단순 '본인확인' 보다는 '실명증표 확인' 수준의 효과가 있는 방식일 필요

V **향후 계획**

- 「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」 개선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지속 추진

- 금융 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「**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**」 전면 **개정**(6월 중, 주요내용 첨부)

참고 「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」 개정

1. 추진 내용

- (현황) 금융실명제의 실무해석서인 '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(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, '13.12)'에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('14.5),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'15.12), 다수의 유권해석 사항 등이 미반영되어 있음
 - 금융 현장에서는 검사·감독상 문제 발생 소지를 염려하여, 업무해설서 내용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음(→금융회사별로 변경된 유권해석 등의 수용 및 현장 적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)
- (개선)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법 적용 관련 금융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명확인 업무관행 개선을 지원
 - 2분기 내 금융감독원·은행연합회간 협업을 통해 개정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 발간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개정 금융실명법령 반영('14.11월 실명법 및 실명법 시행령 개정)
 -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(법 제3조 제3항)
 - 실명(實名)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'명의자의 소유'로 추정(법 제3조 제5항)
 -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·중개 금지(법 제3조 제4항), 위반시 형사처벌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 가능
 -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(제3조 제6항), 위반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가능
 -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 위·수탁 허용(시행령 제4조의2)
- 금융실명거래 위반시 제재 합리화('16.2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)
 -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한 절차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직원 제재 감경
 -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제재의 차등 적용

-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('15.12)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및 절차('15.5)
 - 업무절차
 -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(은행연·금투협 마련)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,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 수행
 - 업무방식
 - 이중확인(①신분증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) 중 2가지 의무 적용
 - 다중확인(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,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~⑦ 중 추가확인) 권고
- 기타 실명법 관련 유권해석 신설·변경
 - 국내 외국계증권회사와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면제 가능 여부 →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능
 -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없이 정보 제공 가능 여부 → 가능
 -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'서면상 요구나 동의'에 전자문서 포함 여부 →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요건 충족시 전자문서 가능
 - ARS 또는 녹취를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가능 여부 → 불가능
 -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 연결계좌 개설 여부 → 가능 (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 등의 경우 별도 실명확인 필요)
 - 일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가 특정회사의 서버를 거치는 경우 위수탁 계약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가 필요한지 여부 → 불필요
 -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인지 여부 → 경제적 실질이 공익신탁 등을 통한 기부인바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님
 - 법인 대표이사 변경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→ 불가능
 - '14.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'14.11월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여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→ 해당
 - 복합점포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공유 및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명의인 요청 방식에 따른 제공 가능 여부 → 가능